

十五世紀 朝鮮의 水産業

盧 道 陽

〔鹽 法〕

1

今日과 같은 韓國 空間의 모든 地理的 構造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15世紀 即 李氏朝鮮의 初期는 確實히 한 劃紀的인 時代가 된다.

15世紀 朝鮮의 水産業에 關한 史料는 李朝實錄·經國大典을 비롯하여 比較的 豊富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歷史的 研究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지, 우리 地理學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大端히 僅少하다고 하겠다. 따라 이 時代의 水産業에 關한 政策的 記錄 또는 制度·徵稅 等에 이르러서는 어느 程度 깊이 있는 研究가 可能하나, 漁場과 魚類, 魚鹽 等の 技術, 水産業의 地域性 等에 關한 研究는 史料의 制限을 받아 困難한 點이 많다.

15世紀 朝鮮의 水産業에는 漁業을 비롯하여, 養魚·採藎(海草採集)·製鹽業 等 여러 가지가 있으나 本稿에서는 漁業과 鹽業만을 다루기로 한다.

2

15世紀의 朝鮮 水産業도 다른 產業과 마찬가지로 李氏王朝의 政策의 影響을 많이 받은 만큼 이를 疎忽히 할 수 없다. 高麗朝의 뒤를 이은 李成桂는 1392年 即位하자, 前朝의 잘못된 點을 거울 삼아 여러 가지 政治的 改革을 斷行하였다. 特히 水産業에 關하여서는 課稅에 있어서 反省하였고, 制度로서는 漁梁·山澤에 關하여서는 東班의 司宰監에서, 鹽稅는 義鹽色에서 管掌하게 하였다. 그 施政의 根本精神을 開國功臣 鄭道傳은 “朝鮮經國典”에서 高麗朝의 弊政과 關聯시키어 다음과 같이 豪族의 私有化를 禁하며, 百姓과 利益을 같이 한다고 말하였다.

〔山場·水梁〕¹⁾

「前朝之時 山場水梁 皆爲豪強所占奪 公家不得其利焉 殿下即位 革其弊法 收而爲公家之用」云云

「前朝 自忠宣王立鹽法 使民納布受鹽 以資國用及其法弊 布人於官 鹽不及己 民心苦之 殿下即位 首降德音 一革前朝弊法 蓋與民同其利 非禁而權之也」
勿論 文章上的 誇張도 있고, 御用學者的 態度도 없지 않았지만, 前朝의 諸法을 두 곳에서 모두 “弊法”이라 斷定하였고, 이러한 것을 殿下(李太祖)가 모두 改正하여 “私有化禁止”와 “與民同其利”를 主眼으로 하는 施政方針을 세웠다고 한다. 即 當時의 水梁(漁場)은 여러 豪族들이 私占하여 國家에서 그 利益을 거두지 못하였고, 鹽法에서는 반드시 納布하여야만 소금을 주게 되었다. 李太祖는 이러한 弊法을 改正하여 漁場의 利益을 公家에도 돌리고, 鹽法에서는 沿海州郡에 鹽場을 두어 모두 官有로 하고 官에서 煮鹽하여 百姓들에게 布·米를 받고 專賣하는 原則을 세워, 結局 모든 利益을 國家와 百姓이 다같이 차지하게 하였다.

이러한 “與民同其利”의 態度는 全李朝時代를 통하여 水産業에 대한 公式的인 基本政策이라 하겠다. 이러한 政策은 드디어 立法化되어 經國大典, 戶典에는 “諸道 魚筋·鹽盆 分等成籍 藏於本曹·本道·本邑”이라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를 勵行하기 위하여 處罰 規定까지 다음과 같이 制定되었다. “漏籍者杖八十 其利沒官 私占魚筋者同”이라하여 漏籍과 私有化를 禁止하였으며, “漁筋給貧民三年而遞”이라하여 百姓과 같이 利益을 거둔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實際로서 建國初의 國家財源의 確保와 實施 官吏의 不正으로 이러한 根本精神과 基本政策이 文字 그대로 實行되지는 못하였다. 太祖가 即位한 지 三年만에 이미 이러한 徵兆가 보이였다. 即 都評議司들은 各處에 散在한 公私의 魚梁·鹽盆을 모두 司宰監에 隸屬시키고, 屯田을 復舊시키어 屯戍軍으로 煮鹽하기를 請하였으며²⁾, 即位 7년에는 慶尚道의 沿海民들이 魚鹽 稅金의 納付를 念慮하여 流亡하는 일이 있어 百姓들의 恒産을 기다려 收稅를 請하였다³⁾. 또 太宗 14년에는 “又收私鹽稅 其數不爲不多 然其質 率皆不緊之物 多歸與之人”⁴⁾이라 하여 私鹽이 盛하였다.

1) 三峰集卷之七 朝鮮經國典上 2) 太祖實錄卷五, 太祖三年正月戊午 3) 太祖實錄卷十三, 太祖七年正月己未 4) 太宗實錄卷二十五, 太宗十四年九月戊寅

漁梁·鹽盆에 課稅하여 國家 財政, 特히 軍資에 充當함은 이미 前朝에서도 實施하였지만 15세기 李氏王朝에서도 이를 踏襲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國家 事情이므로 漁梁·鹽盆에 對한 課稅 及其徵收方法 如何에 따라 當代의 水産業은 크게 左右되었음은 農業의 境遇에서 貢賦와도 같다.

課稅의 如何라 함은 結局 漁梁·鹽盆의 權門勢家の 私有化와 實施官吏의 奸計의 두 가지로 要約된다. 이러한 例證을 試論함은 本論題에 適當치 않으므로 15世紀 初期의 若干의 例를 들면, 1417年(太宗17年)에 義禁府 所屬의 屯田·魚梁을 罷하였으며⁵⁾, 1425年(世宗7年) 戶曹所屬의 各道 魚梁을 庶民에게 주었음은 前者의 例이고, 1446年(世宗28年) 民間煮鹽을 中止하고 船軍煮鹽을 復舊하였으며⁶⁾, 義鹽色을 罷하고 轉運色을 復活하였음은 後者의 例이다. 그렇다고 水産業을 恒常 萎縮시키는 이러한 例證뿐만은 아니었다. 1437年(世宗19年)에는 下三道에 凶年이 繼續되었으므로 그 救濟策으로 魚鹽·鹽盆을 各處에 增設시키게 되자 이를 契機로 水産業 特히 鹽業이 空前의 大發展을 보게 되었다. 各道 敬差官의 試驗製鹽에 依한 義鹽色의 報告로 當時의 製鹽表⁷⁾를 보면 다음과 같다.

鹽盆所在地	鹽盆數	所役船軍	所役日數	製鹽量	和賣結果			耕作費價
					布	雜穀	餘鹽	
江原道 三陟	9	60	40	170	73	32	20	石
京畿道 南陽	13	140	18	644	248	31	79	34
黃海道 甕津	4	30	28	359	67	.	5	6
慶尚道 東萊	12 19	120 109	14 15	616	10	.	597	.
忠清道 泰安	14	200	48	1023	161	148	395	.
全羅道 興陽	10	100	20	681	178	100	187	16

이것으로 當代 全國의 製鹽量을 推測할 수 밖에 없다. 15世紀 中葉은 政治的으로나 文化的으로나, 隆盛時代를 이루었지만 水産業에서도 또한 隆盛時代를 이루었다. 이 時代를 絶上으로 차츰 魚梁·鹽盆의 私有化가 漸增하여 가고 地方官吏의 不正이 되풀이되어 政府에서는 改革을 試圖하고, 弊風 防止에 努力하였으나, 現代의 意義에 있어서의 殖産의 産業開發이 發展되지 못하고, 惰性이 繼續되어 갔다.

3

漁獲의 技術·方法은 當代의 文獻이 稀少하여 後世

의 것(文獻備考 財用考, 萬機要覽 財用篇)을 引用하여 推測할 수 밖에 없다. 大體로 그 技術·方法이 幼稚하였지만 漁獲의 場所的 設備의 差異에 따라 漁箭·漁條·漁場·漁基 等の 區別이 있고⁸⁾, 그 外에도 土箭 扈桶·網基·漁埃·網船·擗羅 等の 方法도 있었다.

漁箭이라 함은 魚路에 따라 防竹을 세우고 薪簾을 둘러 枉桶을 만들어 그 안으로 魚群을 들어오게 하고 潮水의 물러감을 기다려 잡는 方法인데, 西海에서 가장 普遍的인 漁獲方法이다. 이 漁箭도 地方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는데, 黃海道의 土箭에서는 麻竹으로 防簾을 만들어 세우고 게를 잡는 데 不過하고, 全羅道의 漁箭은 大·中·小의 三等으로 나누는 데, 大箭은 簾長이 300~600把가 되고, 枉桶의 水深이 2丈이나 된다. 忠淸道에서는 靑石漁箭이 가장 有名하여 漁利가 많았고, 全羅道에서는 古群山·忠男島·靈光·扶安·萬頃에 比較的 大規模의 漁箭이 있었다.

漁條라는 것은 魚群이 遠海의 輻湊한 海路에 있어 漁船을 여기에 대어 網을 使用하여 잡는 곳을 말하였고, 漁場이라 함은 한 바다를 둘러 싸고 魚族이 모여 大小漁船들이 網을 쳐 漁獲하는 곳을 말하며, 地勢가 좋은 곳을 골라 魚類를 잡는 곳을 漁基라고 하였다.

但 慶尚道에 있어서는 漁場, 漁條, 防簾의 三種類만을 區別한 듯하다. (文獻備考 財用考) 적어도 15世紀 前半에 있어서 漁梁이라 함은 一般的으로 漁場의 意味로서 使用하였다. 漁梁은 世宗實錄地理志는 勿論, 慶尚道 續撰地理志에도 보인다. 地理志에 依하면, 15世紀 前半(世宗實錄地理志 事目調査 當時)에는 全國 海岸 또는 大江邊에 다음과 같이 6地方에 걸치어 355個所의 漁梁이 分布되었는데, 分布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西海岸에 集中된 感이 있다.

京畿道 8郡縣 34個所 忠淸道 12郡縣 136個所
慶尚道 4郡縣 7個所 全羅道 4郡縣 50個所
黃海道 8郡縣 127個所 咸吉道 1郡縣 1個所

그러나, 約 40年이 지난 即 15世紀 後半에 이르러 이러한 漁梁의 開拓은 擴張되어 그 數도 增加되어 간 듯하다. 全道를 比較하려면 史料의 缺乏으로 不可能하나 多幸히 現存한 慶尚道續撰地理志(1469)가 있어 慶尚道에 限하여 比較가 可能하므로 이와 比較함으로써 다른 道도 推測할 수 밖에 없다.

世宗實錄地理志(15世紀 前半)

(前出 4郡縣) 慶州에 1個所, 漆原에 1個所, 昔

5) 太宗實錄卷三十三, 太宗十七年六月戊子 6) 世宗實錄卷百一十一, 世宗二十八年二月辛酉 7) 世宗實錄卷百一十一, 世宗二十八年正月癸未 8) 文獻備考 卷一百五十八 財用考 五에, “沿海捉魚有漁箭條 有漁場有漁基 從魚路立防竹排薪簾設枉桶以受魚 或截全洋或截半洋 謂之箭魚隊 有自遠海輻湊之路 便如路條之船於此設網獲魚 謂之條 環一洋魚族 所聚大小魚船 逐水設網 捉魚 謂之場 地勢便好而宜於捉魚者謂之基……” 震檀學會編, 韓國史近世前期篇 p. 776

州에 2 個所, 河東에 3 個所.
慶尙道 續撰地理志(15 世紀 後半)

41 郡縣 58 個所.

內譯; 安東 1, 寧海 1, 盈德 2, 清河 1, 興海 2, 迎日 1, 長鬐 2, 慶州 3, 蔚山 6, 機張 1, 東萊 1, 金海 1, 鎮海 1, 晉州 1, 固城 4, 泗川 1, 昆陽 1, 南海 3, 巨濟 1, 密陽 1, 大丘 1, 陝川 1, 清道 1, 永川 1, 醴泉 1, 榮州 1, 梁山 1, 居昌 1, 三嘉 1, 宜寧 1, 河陽 1, 龍宮 1, 奉化 1, 漆原 2, 咸昌 1, 高靈 2, 山陰 1, 丹城 1, 禮安 1, 靈山 1, 昌寧 1.

以上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慶尙道는 4 郡縣에서 41 郡縣으로, 7 個 漁梁이 58 個 漁梁으로 增加되어 갔다 이 統計가 表示하는 바와 같이 15 世紀의 前半에서 後半에 걸치는 時代는 世宗의 善政도 있었지만 朝鮮 漁業史上 長足の 進歩를 가져온 時代라 하겠다. 西海에 面한 各 郡縣도 거의 이와 같이 漁梁이 增加되었으리라고 推測된다.

漁梁의 分布를 보면 前에 言及한 바와 같이 西海岸에 發達되었는데, 10 個 以上の 漁梁을 가진 郡縣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康翎 84, 泰安 46, 茂長 34, 洪州 33, 瓮津 26, 舒川 17, 庇仁 15, 靈光 13, 瑞山 10.

以上の 西海岸 여러 漁梁은 다음과 같이 大體로 黃海漁場, 京畿漁場, 忠清漁場, 全羅漁場 및 慶尙道漁場의 五大漁場으로 區分된다.

① 黃海 漁場 康翎·瓮津의 여러 漁梁을 中心으로 하여 延安·長連·豐川에 미치는 漁場이다.

○黃海道漁場의 郡縣別 漁梁數.

長連 1, 甕津 26, 殷栗 1, 康翎 84, 豐川 7, 海州 4, 長淵 2, 延安 2.

특히 康翎縣에는 84 개의 漁梁이 있어서 當時 全國에서 第一 많고 漁梁이 分布된 地方이다. 이들 여러 郡縣의 住民들은 “以魚鹽爲先”⁹⁾이라 하여 漁業을 專業으로 하였다. 康翎·海州·豐川 漁梁에서는 主로 青魚를, 長淵에서는 青魚와 古道魚를 잡았다. 그리고, 海州에서 延安에 이르는 여러 漁梁에서는 石首魚·새우의 魚獲됨이 이 漁場의 特色이다.

그 중에서도 海州 南方의 延坪에는 春季에서 夏季에 이르는 사이에 여러 곳의 漁船들이 모이며 網으로 石首魚를 잡는데, 이 때 官에서는 稅金을 徵收하여 國用에 使用하였다고 한다¹⁰⁾.

그리고, 延安地方에는 九十九曲水梁과 斑泥梁이 有名한데, 前者에서는 秋冬季節에 게(蟹)를 잡고, 後者에서는 3 月에서 5 月에 걸쳐 紫蝦를, 5 月에서 7 月 사이에는 白蝦를 漁獲하였다¹¹⁾.

② 京畿 漁場 仁川·江華의 두 都護府를 中心으로 하는 漁場인데, 黃海 漁場과 忠清 漁場의 中間 海域이다.

○京畿 漁場의 郡縣別 漁梁數

江華 2, 安山 5, 通津 2, 水原 2, 金浦 1, 南陽 2, 富平 1, 仁川 16.

本漁場의 特色은 漁獲하는 魚族의 多樣性에 있다. 本漁場에서 잡히는 魚族은 15 世紀 前半에는 約 27 種(世宗實錄地理志)이 있는데, 同世紀 後半에는 38 種(新增 東國輿地勝覽)으로 增加되었다. 例로 仁川 各 漁梁에서 잡히는 魚種을 들면, 眞魚, 烏賊魚, 鱸魚, 刀魚, 洪魚, 廣魚, 舌大魚, 蘇魚, 石首魚, 亡魚, 沙魚, 首魚, 民魚, 加火魚, 到美魚, 大蝦, 生蛤, 黃蛤, 落地, 小螺의 20 魚種¹²⁾에 達한다.

通津縣 北祖江에는 멀리 中國서 求하여 가는 黃大魚라는 他處에 없는 特殊한 魚族도 있었다. 그리고, 本漁場의 南北에 있는 黃海 漁場과 忠南 漁場에서 產出되는 青魚가 보이지 않음이 注目된다.

③ 忠清 漁場 忠清道の 西海沿岸 一帶인데, 泰安郡을 中心으로 하여 北으로 牙山 南으로 舒川에 이른다

○忠清道 漁場의 郡縣別 漁梁數

牙山 3, 洪州 33, 稷山 1, 結城 1, 唐津 1, 保寧 5, 海美 1, 庇仁 15, 瑞山 10, 藍浦 3, 泰安 46, 舒川 17.

本漁場은 어느 漁梁이나 類似한 魚族이 漁獲됨이 特色이다. 卽, 青魚·沙魚·洪魚·石首魚·民魚·刀魚 등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반드시 以上 漁梁에서만 漁獲되는 것은 아니지만, 當時 그 地方 土產으로서 有名한 水產物은 다음과 같았다.

[瑞山]—石花·落地. [海美]—石花. [結城]—落

9) 世宗實錄 地理志, 海州, 瓮津, 長淵, 康翎, 延安의 各 條 10) 世宗實錄 海州條 11) 世宗實錄 延安都護府 註釋條 12) 朝鮮時代의 魚名은 大端히 複雜한데, 여기 列擧한 몇 漢字 魚族을 우리 말로 적어 보면, 眞魚는 준치인데 箭魚·矢魚 鱒魚라고도 쓰며, 落地는 낙지인데 落蹄·絡締·章擧·章魚라고도 쓰며, 加沙里는 우모채인데 牛毛菜·加沙衣·加土里 加四里·石花菜라고도 쓴다. 이와 같은 例를 다음에 들어 본다. 鱧魚, 鮎魚, 餘項魚, 如項魚=미여기. 鯽魚, 附魚=붕어 白魚=뱅어. 秀魚, 溜魚=송어. 訥魚, 累致魚 羅致魚=늘치. 魴魚, 彈塗魚, 闌胡魚, 芒頭魚=망두어. 銀口魚=도로묵. 鏡鮮魚 鯪魚=쏘가리. 長魚, 鰻魚=백장어, 鰻魚, 河豚, 河豚=복. 刀魚, 長刀魚=칼치. 葦魚, 刀魚, 蔑魚=옹어. 鯽魚, 蠶魚=가물치. 鯊魚, 魷魚, 沙魚=모래모지. 洪魚, 弘魚, 加兀魚, 紅魚=가오리. 民魚, 鮓魚=민어. 兵魚, 瓶魚, 鯽魚=병어. 蘇魚=반병어. 石首魚, 石秀魚, 石魚, 玆魚=조기.

地·銀口魚. [唐津]—石花·落地. [泰安]—海衣·海青·落地·生魚包. [洪州高丘縣]—大蝦·洪魚. [藍浦]—生蛤·落地·銀口魚. [舒川]—石花·民魚·眞魚·生蛤. [韓山]—白魚·洪魚.

④ 全羅 漁場 주로 全羅道の 西海沿岸을 말하는데 茂長의 여러 漁梁을 中心으로 하여 海岸을 따라 樂安에 이른다. 忠淸 漁場의 繼續이어서 魚類도 相似하다

○ 全羅 漁場의 郡縣別 漁梁數

扶安 2, 茂長 34, 靈光 13, 樂安 1.

中心 漁場인 茂長은 34 個所의 漁梁을 擁하고 있어 百姓들도 漁業에 從事하는 사람이 많아, 唐津縣民과 같이 “俗好漁獵”¹³⁾이라 한다. 여러 漁獲物中에도 石首魚가 가장 有名하였던 것 같다. 靈光의 여러 漁梁은 모두 本郡 西쪽 馬城佛洞에 있는데, 亦是 石首魚가 有名하고 漁獲도 많다. 特히 波市坪(本部 西쪽에 있는데 石首魚 市場을 여는곳?)에는 春季에서 夏季에 걸쳐 全國漁船이 이곳에 모여 漁網으로 石首魚를 잡는다. 이때 官廳에서는 税金까지 徵收하는데 後世의 波市라는 말은 이곳에서 起源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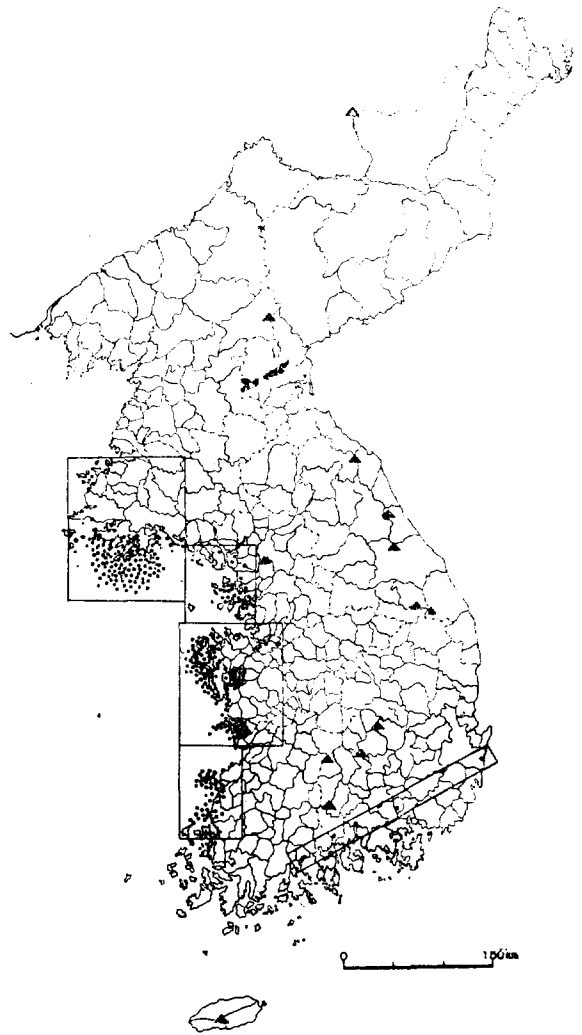
⑤ 慶尙 漁場 15世紀 前半에 있어서는 아직 漁場이라고 할만큼 漁獲이 盛하지 못하여 주로 江邊 또는 江口에 漁梁이 數個 있을 程度이었으나, 後半期에 이르러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各處 海岸에 漁梁이 開拓되었다.

○ 15世紀 前半期 慶尙 漁場의 郡縣別 漁梁數

(前出 p. 2參照)

前半期의 本道の 漁業은 海岸과 關係 없이 內陸 水路에서 또는 江口에서 魚類를 漁獲하는 形便이었다. 그러므로, 漁獲物도 年魚·銀口魚·大口魚 等 數種에 不過하였다. 慶州의 漁梁은 安東縣 東쪽 輸方洞 大川邊에 있는데, 주로 年魚를 잡았고, 晉州의 漁梁은 金陽村과 江州村에 있었는데, 南江邊에 位置하여 銀口魚·鯉魚를 잡았다. 漆原의 漁梁은 龜山縣 餘音浦에 있었는데, 落東江口에 接近하여 大口魚을 잡았고, 河東에서는 銀口魚가 有名하였다.

15世紀 後半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地方이나 漁梁數에 있어서 約 10倍의 增加를 보여 慶尙道 沿岸을 훌륭한 漁場으로 만들어 漁業에 劃期的인 發展을 보게 된 것이다. 本漁場에서 產出되는 魚類는 大口魚·靑魚·廣魚·錢魚·沙魚 等이고, 內陸地方에서는 銀口魚가 一般的이었다. 그리고 注目되는 것은, 西南海岸에서 많이 보이던 石首魚는 南海縣까지에서만 漁獲되었고, 다른 慶尙道 沿岸에서는 그 記錄이 보이지 않는다



15세기 조선의 어량 분포

끝으로 平安道와 江原道の 漁場에 關하여 追記하고자 한다. 以上の 漁場에 關한 史料는 大體로 世宗實錄地理志인데, 여기에는 위 2道에 대하여서는 1個所의 漁場도 記錄되어 있지 않다. 이것으로 全然其 2道에는 漁場이 없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다른 史料 東國輿地勝覽을 引用하여 以上 2道の 漁場을 살피기로 한다. 여기에 依하던 肅川都護府의 唐子浦, 郭山郡의 召浦, 龍川郡의 馬島¹⁴⁾에 漁梁이 있다고 明記되어 있으며, 江原道에는 高城郡의 風俗條에 “捕魚爲業”이라 하였고 이를 說明하여 “種麻不紡績索而爲網 以捕魚爲業”¹⁵⁾이라고 하였고, 通川郡의 風俗條에는 “漁鹽之利 貿易以食”이라 되었고 土產條에는 魚類가 大部分을 차지한 것을 보아, 平安道와 江原道에도 相當數의 漁梁이 所在하였다고 推定된다.

13)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茂長 及 康津條 14) 新增東國輿地勝覽卷五十二(肅川), 卷五十三(郭山·龍川)條 1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四十四(高城) 卷 四十五(通川)

製鹽의 方式은 대개 鹽田式 製鹽法과 海水直煮法의 2種이 있었는데, 前者를 가장 많이 使用하였다. 鹽田式 製鹽에 있어서는 採鹹作業과 煮鹽作業의 두 過程을 거치게 되었다. 製鹽 施設도 곳에 따라 다르지만, 普遍的인 것을 들면, 大略 鹽田, 鹽井, 製鹽所, 鹽竈 등의 여러 部分으로 되어 있다. 當時의 製鹽技術에 關한 直接的인 記錄이 稀少하므로 多少 時代가 내려와서 이루어진 林園十六志의 鼎組志編에 依하여 짐작할 수 있다.

“海邊掘坑 上布竹木 覆以蓬萊 積沙于上 每潮汐衝沙 則鹵鹹, 淋干炬中 水退 則以火炬照之 鹵氣 衝火皆滅 因取海鹵 般繫中煎之 頃刻而就”¹⁶⁾

그리고, 最近(韓末~日政初期)의 朝鮮産業法의 有堤鹽田의 記錄을 들어 15世紀의 技術과 그리 差異가 없지 않는가 疑心한다.

採鹹作業은 鹽井에서 撒砂를 가래로 掘出하는 일에

서 始作된다. 그 撒砂를 지게로 運搬하여 鹽田에 散布하고, 수레(馬耙)로 鹽田面을 갈음으로써 撒砂를 다시금 고르게 散布한다. 그리고, 轉木으로 砂塊를 粉碎한 다음에 海水를 뿌린다. 海水를 뿌린 다음에 다시금 馬耙로 鹽田面을 간다. 다음날에도 이와 같은 作業이 2, 3회에 걸쳐서 거듭된다. 3日乃至 4日째 되는 날 아침에 수레로 撒砂를 파서 비레(集板)를 끌어 모아 지게에 담아서 鹽井에 運搬한다.

鹽井에 運搬된 撒砂를 3, 4인이 밟아서 굳게 한다 그 다음에 海水를 부어 드디어 鹹水를 採取한다.

이와 같은 採鹹作業 過程에 있어서는 수레, 轉木 등의 道具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대개 牛力을 使用한다. 그러나 모든, 採鹹作業 過程을 人力으로서 完了하는 方法도 적지 않다.

다음에는 煮鹽作業의 概要를 들어보면, 于先 採取된 鹽水는 木桶, 지게, 물통 등으로 煮水池에 運搬된다. 煮鹽은 晝夜兼行으로 이루어지는 境遇도 있고 晝間만 이루어지는 境遇도 있다. 鹽釜에서 끓여낸 鹽은 가마 위에 앉아서 鹽汁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區 地方名	採 鹹 用 器 具		煎 熱 用 器 具	
	이름	用 途	이름	用 途
黃 海 面 (京畿道地方)	나 이 저 바기저 등 장 귀 닷 파 가 래 수 레 나 무 통	撒砂를 끌어 모은다. 鹹水地에서 鹹水를 쫓는다. 鹽田을 두드린다. 海水를 鹽井에 담아 올린다. 鹽井을 관다. 鹽田의 撒砂를 고르게 한다. 鹹水를 運搬한다.	조 (甕) 鐵 釜 골 꼬 리 삼 태 기 살 피 뒤 곡 말 다 라 박 부 지 게	鹽釜 안의 鹽을 끌어 모은다. 鹽을 담는다. 鹽釜 안의 굳은 덩어리를 깬다. 鹽釜 안의 鹽을 퍼 낸다. 木 鹽釜 안에 鹹水를 더 넣는다. 煎熱에 쓰는 火
南 海 面 (全羅道)	수 저 가 저 다 리 덩 게 부 통 단 백	鹽田을 고르게 한다. 鹽田의 撒砂를 파낸다. 撒砂를 운반한다. 鹽田面의 撒砂 덩어리를 깬다. 著水 運搬用의 통 " " 통 撒水한다.	소 고 기 보 데 미 총 가 려 두 곡 담 가 저 담 백	鹽을 담는다. 거품을 抄取한다. 鹽을 파낸다. 鹽을 끌어 모은다. 鹽을 끌어 모은다. 鹹水를 담아 둔다.
東 海 面 (咸鏡道地方)	카 래 지 수 레 건 목 디 레 박 군 나 저 구 합 관 합 수	撒砂를 散布하고 鹹砂를 모은다. 撒鹹砂를 運搬한다. 馬 鹹 引 板 鹹 板 集 用 鹽井田의 鹹水를 고르게 한다. 鹹水를 運搬한다.	甕 釜 附 屬 수 차 고 비 쭈 꼬 지 누 저 박 산 치 준 차	鹹水를 鹽水地에서 鹽釜로 옮긴다. 鹽을 鹽釜의 구석에 끌어 모으는 것. 鹽을 鹽釜에서 抄出한다. 柄 杓 鹽의 運搬用 鹽釜의 破損을 修繕하는 데 使用

16) 서울大學校 影印板 林園十六志 鼎組志 卷六 鹽條 煮海鹽分.

製鹽場 안에 있는 居出場에 옮기고 그 곳에서 包裝되어 드디어 搬出한다¹⁷⁾.

또 가장 原始的인 製鹽法이라 할 만한 海水直煮法은 위에서 말한 林圀志에 “花鹽印鹽方”, “常滿鹽方”, “臨擊廳”이라는 題目이 있어 그 方法을 말하였다. 이 方法은 鹽田을 構造치 않고 鹽甕만을 만들어 海水를 鹽釜에 넣어 長時間 煎熬하여 소금을 얻는 것인데, 咸吉道에서 가장 많이 實施된다.

鹽業의 生産道具는 各地方에 뚜렷한 共通性이 있지만, 또 各地方에 따라 名稱技能이 다른 點도 많다.

이는 各地方의 自然條件이 다르고 製鹽 技術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韓國鹽業調查報에 依하여 黃海에 面한¹⁸⁾ 京畿道(仁川·富平·金浦의 各郡)과 南海에 面한 全羅南道(海南·珍島·莞島·康津의 各郡)과 東海에 面한 咸鏡南道(文川·永興의 各郡)에서 使用하고 있는 生産道具를 들어 15世紀의 그것을 推測할 수 밖에 없다.

위표와 같이 朝鮮의 三方面의 鹽生産器具는 多少의 差異가 있지만 그 中에서도 鹽釜의 差異가 가장 根本的인 것이라 하겠다. 鹽釜에는 土釜와 鐵釜의 2種類가 있다고 하지만, 鐵釜는 記錄에 依하면¹⁹⁾ 18世紀 初期 1708年—肅宗 34年)임을 보아 15世紀에는 一般的으로 土釜이었다. 筆者의 泰安半島 沿岸의 古鹽田의 踏査에 依하면 土釜도 곳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지만 가장 普遍的인 것은 貝殼牡蠣殼 등을 쌓아 놓고, 그 內外面을 牡蠣殼灰나 牡蠣殼粉을 鹽水나 鹹水와 반죽하여 발라 벽을 만드는 方法이다. 그러나, 蔚山地方과 같이 牡蠣殼·牡蠣灰 등을 使用치 않고 자갈·돌 등을 使用하는 것도 있다.

다음은 15世紀에 朝鮮沿岸에 鹽田이 어떻게 分布되었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鹽田에 對한 文獻도 많지 않지만 于先 世宗實錄地理志의 그것을 들어야 하겠다. 이 記錄은 全卷을 通해 鹽田에 對한 用語가 統一되지 않아, 資料로 삼는 데는 若干의 檢討가 必要하다. 地理志에는 鹽所 또는 鹽盆·鹽井·鹽區라는 用語가 보이고 어느 地方에는 以上の 여러 用語가 없고 鹽倉만 記入한 곳이 있어, 이들을 統一的으로 어느 分布圖 같은 것을 作成하기는 困難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解釋을 내리고 分布를 論述키로 한다.

〔鹽所〕 소금을 生産하는 一定한 地域을 말한다. 耕作地나 岱地의 筆에 適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鹽所는 그 面積의 大小가 一定치 않다. 一鹽所

內에도 全羅道 靈光의 一鹽所에 113개의 鹽盆이 있기도 하고 茂長의 一鹽所에는 30個의 鹽盆이 있고, 京畿道 廣州의 一鹽所에는 一鹽盆, 二鹽區가 있다.

〔鹽盆〕 鹽盆은 鹽釜를 말한다. 以上에 말한 바와 같이 鹽所에 따라 그 數는 一定치 않다. 道에 따라서는 鹽所는 全혀 記錄치 않고 鹽盆만 記載한 곳이 있다.

〔鹽井〕 바닷물을 貯藏하여 두고 鹽田에 물을 데는 응덩이를 말하는데, 忠淸道 瑞山郡條에 鹽所鹽井 $\frac{2}{3}$ 으로 註釋이 붙은 것은 것으로 鹽所內의 一部分이 틀림없다.

〔鹽區〕 오직 京畿道 廣州郡條에 唯一한 記載인데, 亦是 鹽所의 註釋으로만 되었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는 未詳하다.

〔鹽倉〕 말할 것도 없이 소금을 넣는 倉庫인데, 鹽所가 鹽盆 대신에 鹽倉을 記入한 곳이 있어 問題가 된다. 가령 全羅道의 興德縣과 高興縣條²⁰⁾를 보면 確實히 鹽所·鹽盆 등의 用語는 없어도 鹽倉이 記載되었고 註釋에는 “公私干並幾名 春秋 鹽幾石”까지가 記入되어 있다. 鹽田이 없이 이런 것이 있을 理 없으므로 마땅히 鹽所가 있는 것으로 看做되어야 하겠다²¹⁾.

鹽田은 全國 海岸의 여러 郡縣, 即 京畿道에 11, 忠淸道에 11, 慶尙道에 20, 全羅道에 14, 黃海道에 9, 江原道에 9, 咸吉道에 15, 合 102의 各 郡縣에 分布되었다. 全國 郡縣中 가장 많이 鹽盆을 所有하고 있는 곳은 全羅道 靈光의 113 鹽盆이고, 다음은 平安道 永柔縣의 103 鹽盆과 黃海道의 康翎縣의 89 鹽盆이고 다음은 瓮津縣, 蔚珍縣, 延安都護府, 平海縣, 咸從縣의 順序이고, 鹽所로 가장 많이 所有하고 있는 郡縣은 京畿道의 南陽都護府의 44鹽所, 다음은 全羅道 羅州牧과 忠淸道 唐津縣에 35鹽所이다.

鹽所와 鹽倉의 數의 關係를 比較的 統計가 된 黃海道의 九郡縣을 例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郡縣名	海州	延安	豐川	安岳	瓮津
鹽所	4	3	4	7	9
鹽盆	33	51	16	12	82
郡縣名	長連	長淵	康翎	殷栗	合計
鹽所	3	1	8	1	40
鹽盆	14	3	89	6	306

이것으로 黃海道에 限하여서 보면, 一鹽所에는 平均

17)高承濬, 近世韓國產業史研究 p.157 18)高承濬, 近世韓國產業史研究, p.163 19)秋官志 雜令 禁養 鐵釜煮鹽條 20)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高興縣條의 鹽倉 在城內 公私干並 26名 春秋貢鹽 260石, 興德縣條 鹽倉 在城內 公私干並 38名 春秋貢鹽 327石 21)高承濬, 近世韓國產業史研究 p.129와 崔虎鎮, 韓國經濟史概論 p.244의 鹽所 鹽盆의 數의 差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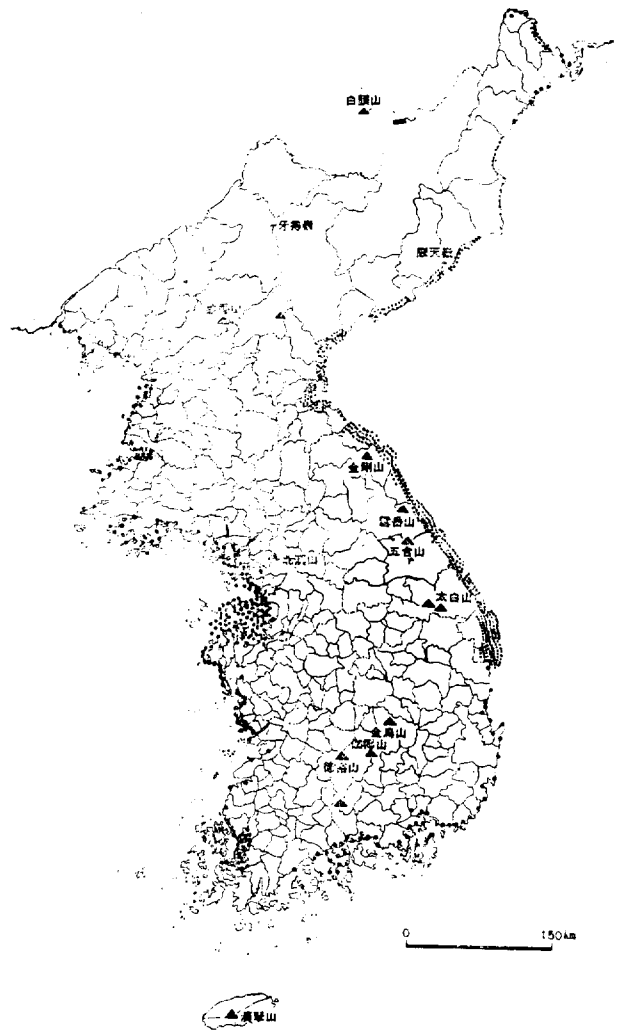
7.7의 鹽盆을 갖추고 있는 셈이 된다.

鹽生産額과 鹽干數는 資料의 缺乏으로 알기 어렵지만 若干의 資料를 가지고 全羅道の 九郡縣 貢鹽生産額과 鹽干數를 推定키로 한다.

郡縣名	羅州	順天	靈光	靈岩	光陽	
鹽干(名)	259	50	1,129	38	34	
春秋貢鹽(石)	2,590	490	1,290	370	214	1:4
郡縣名	扶安	沃溝	興德	高興	合計	
鹽干(名)	113	37	38	26	1,724	
春秋貢鹽(石)	1,127	305	327	260	6,973	

即, 全羅道の 羅州 等 九個郡縣에는 1,724 名의 鹽干이 年 6,973石의 貢鹽을 産出하였으므로 鹽干 1人이 年 約 4石의 貢鹽을 産出した 셈이 된다. 그리고, 靈光의 鹽所의 例를 들면, $1129(名) \div 113(盆) = 10$ 弱으로서 一鹽盆에서 年 約 10石의 貢鹽을 産出하였다. 또 鹽盆數를 前朝高麗時代와 比較하여 보면, 大略 다음과 같은 增加를 보이었다. 資料上 江原道와 黃海道만을 例로 들기로 한다.

高麗朝(11世紀)	李朝(15世紀)
江原道 43	320
黃海道(西海道) 49	306



15세기 조선의 염전류 분포
(큰점은 鹽所 작은 점은 鹽盆을 표시함)

A Study on Fishing and Salt Industry of Korea in the 15th Century, A.D.

Do Yang Roh

Summary:

Maritime products industry at the time of the 15th Century includes fishing, sea-weed gathering, salt-making, and fish culture. However, here deals only two aspects, fishing and salt-making industry.

The government policies influenced great deal to fishing and salt industry during the Yi Dynasty. The policies were amended by *Taejo*, the first King of Yi Dynasty, and made it primarily central government monopoly system. Fishing industries were expanded rapidly after the fourth King, *Sejong*; *e.i.*, in Kyongsang province, a number of fishing grounds were increased from 7 to 58. Also

fishing grounds were grouped into five large fishing districts along the coast of Korean Peninsula.

There were two main types of salt-manufacturing techniques even though the former was more common in practice. The one is so called salt-field (or flat) method by solar evaporation of sea water and cristalizing salt in the artificial salt flat. The other is producing salt simply by boiling sea water in salt pan instead of evaporating sea water in the salt flat under the sun. Government salt depots were built near the salt flat or salt pan for storing salt for transport. The distribution of salt producing places and fishing grounds are shown on the maps.